

「구미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양진오 의원 외 7인

2.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에 따라 공유림과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을 포함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5, 6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1)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

1) 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검토 결과,

-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에서 규정된 일정 요건²⁾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전문적인 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대행 수수료(별표)의 산정을 동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별표 11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 일치성의 확보와 이용자 간 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산림사업을 시행하거나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